



종신	일시납	만 15 세 ~50 세	만 15 세 ~54 세	만 15 세 ~58 세	만 15 세 ~62 세	만 15 세 ~59 세	만 15 세 ~46 세	일시납
	5 년납	만 15 세 ~39 세	만 15 세 ~43 세	만 15 세 ~46 세	만 15 세 ~49 세	만 15 세 ~57 세	만 15 세 ~44 세	월납
	10 년납	만 15 세 ~39 세	만 15 세 ~42 세	만 15 세 ~45 세	만 15 세 ~48 세	만 15 세 ~66 세	만 15 세 ~55 세	
	15 년납	만 15 세 ~50 세	만 15 세 ~40 세	만 15 세 ~43 세	만 15 세 ~46 세	만 15 세 ~64 세	만 15 세 ~61 세	
	20 년납	만 15 세 ~50 세	만 15 세 ~55 세	만 15 세 ~40 세	만 15 세 ~43 세	만 15 세 ~60 세	만 15 세 ~60 세	
	55 세납	만 15 세 ~44 세	만 15 세 ~40 세	만 15 세 ~45 세	만 15 세 ~45 세	만 15 세 ~45 세	만 15 세 ~45 세	
	60 세납	만 15 세 ~50 세	만 15 세 ~46 세	만 15 세 ~40 세	만 15 세 ~48 세	만 15 세 ~50 세	만 15 세 ~50 세	
	65 세납	만 15 세 ~50 세	만 15 세 ~52 세	만 15 세 ~46 세	만 15 세 ~41 세	만 15 세 ~55 세	만 15 세 ~55 세	
	70 세납	만 15 세 ~50 세	만 15 세 ~55 세	만 15 세 ~52 세	만 15 세 ~48 세	만 15 세 ~60 세	만 15 세 ~58 세	
	75 세납	만 15 세 ~50 세	만 15 세 ~55 세	만 15 세 ~56 세	만 15 세 ~53 세	만 15 세 ~65 세	만 15 세 ~60 세	
80 세납	만 15 세 ~50 세	만 15 세 ~55 세	만 15 세 ~57 세	만 15 세 ~56 세	만 15 세 ~61 세	만 15 세 ~62 세		

###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 가. 의무부가하는 특약의 종류

계약자가 제 25 조[기타] ‘다’ 항에 따라 “무배당 하이브리드 플러스 변액 평생보장보험”, “무배당 VVIP 변액평생보장보험” 으로 가입하는 경우,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해지환급금 또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금으로 전환시 고객에게 유리한 가입시점의 보험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무배당 가입당시연금전환특약” 과 “무배당 가입당시유가족연금전환특약” 을 의무부가하여 판매한다.

#### 나. 부가방법 및 부가한도

- (1) 무배당 가입당시연금전환특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 연금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2) 무배당 가입당시유가족연금전환특약의 경우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부가 된다.
- (3) 무배당 가입당시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가입당시유가족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율은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한다.
- (4) 무배당 가입당시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가입당시유가족연금전환특약은 가입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 (5) 무배당 가입당시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가입당시유가족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최소 1,000만원으로 한다.

####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하지 않음

####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 가.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월납의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일시납의 경우 일시납 기본보험료)로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한다.

##### 나.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성립 후 보험기간내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이외에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매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다.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는 계약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중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총액의 200% 이내이다.

단, 전년도까지의 납입보험료 총액(중도인출금 포함)이 전년도까지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20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당해년도에 추가하여 납입이 가능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추가납

입보험료 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합산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 한도로 한다. 인출금액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사업비(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를 부과한다.

다. 특약보험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6. 보험료 할인 및 적립에 관한 사항

가. 금융기관 자동이체시의 기본보험료 할인(평준형, 소득보장형에 한함)

제 2 회 이후의 기본보험료가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입되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1%를 할인한다.

나. 고액계약에 대한 기본보험료 적립(월납에 한함)

주계약 1 억원 이상인 월납계약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립금에 가산하여 적립한다.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적립률
1 억이상 3 억미만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0%
3 억이상 5 억미만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0%
5 억이상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3.0%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해지계약의 부활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제 9 조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 정한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나. ‘가’ 항에서 정한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하지 않거나 부활(효력회복) 후 바로 효력을 잃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금액의 납입이 필요할 수 있다.

다. 계약자의 기본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시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시까지 계약자적립금(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과 ‘가’ 항에서 정한 금액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에서 월공제액을 차감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라. ‘가’ 항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마. ‘라’ 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다음과 같다.

(1) 부활(효력회복) 승낙후 연체보험료가 완납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 2 영업일』

(2) 연체보험료 완납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승낙일 + 제 2 영업일』

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거나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등의 사유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월공제액을 충당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하지 않는다.

##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부활(효력회복)시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계약성립 후 1 개월 경과 후부터(단, 제 19 조[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마’ 항[평균분할투자]에 따라 평균분할투자를 선택한 계약은 평균분할투자기간이 완료된 이후부터) 보험연도 기준 연 12 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단, 인출금액은 10 만원 이상 만원단위에 한하여 가능하다.
- 나. ‘가’ 항에 따라 1 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인출금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단, 특약보험료는 제외)를 한도로 한다. 소득보장형 계약의 경우, 은퇴나이 전 보험기간에는 총 인출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다. ‘가’ 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 원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단,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및 리빙베네핏인출 횟수를 합하여 연 4 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면제한다.
- 라. ‘가’ 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
- 마. ‘가’ 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월납의 경우 연간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의 12 배), 일시납의 경우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30%이상이어야 한다. 단, 추가적립금 이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11. 리빙베네핏인출서비스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일부터 10 년이상 경과한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리빙베네핏인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인출금액은 가입금액의 1~10% 범위 내에서 1% 단위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
- 나. 리빙베네핏인출서비스 이용시 펀드는 변경하지 않는다.
- 다. ‘가’ 항에 따라 리빙베네핏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 원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단,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및 리빙베네핏인출 횟수를 합하여 연 4 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면제한다.
- 라. 회사는 다음의 상황에서 리빙베네핏인출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 (1) 총인출누계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였을 경우
- (2) 계약자적립금이 소진되었을 경우
- (3) 계약자의 중지신청이 있을 경우
- (4) 계약자가 제 23 조[사망보험금의 연금선지급서비스에 관한 사항]에 따라 연금선지급을 신청한 경우

## 12.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13.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보험의 해지환급금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 보험계약대출금액은 『대출신청일 + 제 2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1.5%」로 부리하여 보험계약대출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단,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이 있는 경우 상환금액(단, 1.5%에 해당하는 이자부분은 제외)은 보험계약대출적립금에서 제외하고, 상환일부터 『상환일 + 제 2 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한 후 『상환일 + 제 2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다. 회사가 보험료의 납입연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때에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 14.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가. 월납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보험료 기본납입기간 2년(24개월) 이내에는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보험료 기본납입기간 2년(24개월) 이후부터는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제 15 조 [월공제액에 관한 사항]의 ‘가’항 (2)에 따른 월공제액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이 계약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2) (1)에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의 정의는 약관을 따른다.
- (3) (1)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제 1 회 기본보험료의 경우 청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청약일로부터 30 일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이 경우 특별계정적립보험료를 제 1 회 기본보험료 납입후 청약일로부터 30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까지는 평균공시이율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로 부리적립한 금액을 이체금액으로 하여 기본적립금으로 투입한다.

나) 제 2 회 이후의 기본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기본납입기간 이내에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보험료 납입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월계약해당일 - 제 2 영업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로 하며,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납입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금액을 이체금액으로 한다.
- ② 『월계약해당일 - 제 1 영업일』에 납입한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 + 제 1 영업일』로 하며,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납입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후 월계약해당일부터 『월계약해당일 + 제 1 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을 이체금액으로 한다.
- ③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 + 제 2 영업일』로 하며, 납입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 2 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을 이체금액으로 한다.

다) 추가납입보험료 및 보험료 기본납입기간 이후의 기본보험료의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납입일 + 제 2 영업일』로 하며, 납입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 2 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을 이체금액으로 한다.

## 15. 월공제액에 관한 사항



## 가. 월납

### (1) 보험료 기본납입기간 2년(24개월) 이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보장을 위한 보험료 포함) 및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Ⅱ의 합계액을 말하며, 해당월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기본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한다.

### (2) 보험료 기본납입기간 2년(24개월) 이후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보장을 위한 보험료 포함),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및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Ⅱ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누계액 이상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지환급금(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공제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고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한다. 단,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납입시에 공제한다.

## 나. 일시납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및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Ⅱ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한다.

## 16.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가. 월납의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한다.

### 1) 보험료 기본납입기간 2년(24개월) 이내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해당월 기본보험료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2) 보험료 기본납입기간 2년(24개월) 이후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월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일시납의 경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등의 사유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한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한다.

다. ‘가’ 항 및 ‘나’ 항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린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

라. ‘다’ 항에도 불구하고 ‘가’ 항 ‘2)’ 호에 해당하는 계약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다’ 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를 하지 않는다.

- 1) 매월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이상을 납입한 경우
- 2)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는 경우
- 3) 중도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
- 4) 계약자적립금에서 월공제액 충당이 가능한 경우

17. 계약자적립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8. 이미 납입한 보험료 등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누계를 말하며,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누계

를 말한다.

나. 제 14 조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나’ 항에 따라 해당월 특약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월공제액으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한다.

다.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는 경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적립금 인출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인출금액 차감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자적립금 인출금액을 우선적으로 차감하고,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가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에서 차감한다.

단, “사망보험금” 및 “최저사망보험금”의 계산에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begin{aligned} & \text{■ 인출 전 이미납입한보험료} - \text{인출금액} \\ & \text{■ 인출 전 이미납입한보험료} - \text{인출 전 이미납입한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금액}}{\text{인출전계약자적립금}} \end{aligned}$$

라.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우 및 제 23 조 [사망보험금의 연금선지급서비스에 관한 사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과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감액후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text{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직후 보험가입금액}}{\text{감액직전 보험가입금액}}$$

감액후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 \text{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직후 보험가입금액}}{\text{감액직전 보험가입금액}}$$

## 19.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1)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운용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의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하여야 한다.

(2)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은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의 계산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른다.

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의 최저 사망보험금 보장에 사용한다.

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 중 계약소멸, 해지 등 감소계약에 대한 보증준비금 감소분은 회사의 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I 을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I 을 적용한다.

## 나. 펀드의 유형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가) 채권형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국공채 및 투자등급 이상의 우량회사채, 기타 채권[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으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CD, 기업어음, 기타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한다. 동 펀드는 무배당 S-VIP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채권형”(2010.7.9 설정)과 같은 펀드로 한다.

나) 안정혼합형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의 90%이하로 투자하고,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의 25%이하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기업어음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한다.

다) 혼합형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의 80%이하로 투자하고,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의 50%이하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기업어음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한다.

라) 배당혼합형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의 80%이하로 투자하고,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의 50%이하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

동성자산, 기업어음 및 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한다. 단, 주식은 현금배당이 기대되는 주식 위주로 투자한다.

마) 해외혼합형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증권으로서 집합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에 순자산의 50%이상을 투자한다. 외화 집합투자기구에 순자산의 90%이하, 원화 표시 투자는 순자산의 50%이하,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에 순자산의 80%이하, 주식관련 집합투자기구에 순자산의 50%이하를 투자한다. 또한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의 50%이하로 투자하고,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의 25%이하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기업어음 등에 투자한다.

바) 주식혼합형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관련 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60%이하로 투자하고, 채권[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 등 포함]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80% 이하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CD, 기업어음 등 유동성자산에 투자한다. 단, 주식관련 자산의 투자는 내재가치가 높은 KOSPI200 종목 및 업종 대표주, 우량 코스닥 종목 등을 중심으로 투자한다.

사) 롱텀밸류혼합형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의 80%이하로 투자하고,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의 50%이하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기업어음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한다. 단, 주식관련 자산의 투자는 가치주식[거래소 및 코스닥 종목 중 기업의 실적이나 자산가치에 비하여 저평가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한다.

(2) 제 1 항에서 회사가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 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 1 항에서 정한 투자가능 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다. 특별계정 운용보수에 관한 사항

(1)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 를 합한 보수를 말한다.

(2) 펀드종류별 운영보수는 아래 표의 비용으로 한다.

구 분	비 용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332%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90959%)
안정혼합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514%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140822%)
혼합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537%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147123%)
배당혼합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537%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147123%)
주식혼합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583%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159726%)
해외혼합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582%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159452%)
롱텀밸류혼합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560%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153425%)

(3) 펀드종류별 투자일임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 한도로 한다.

구 분	비 용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1%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27397%)
안정혼합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127%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34795%)
혼합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154%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42192%)
배당혼합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154%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42192%)
주식혼합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208%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56986%)
해외혼합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100%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27397%)
롱텀밸류혼합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181%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49589%)

(4) 펀드종류별 수탁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 한도로 한다.

구 분	비 용
채권형, 안정혼합형, 혼합형, 배당혼합형, 주식혼합형, 해외혼합형, 롱텀밸류혼합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012%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03288%)

(5) 펀드종류별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 한도로 한다.

구 분	비 용
채권형, 안정혼합형, 혼합형, 배당혼합형, 주식혼합형, 해외혼합형, 롱텀밸류혼합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023%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06301%)

(6)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2) 내지 (5)에서 정한 특별계정 운용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보수(판매보수 포함)가 부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보수 수준에 대해 판매 안내자료 등에 기재한다.

#### 라.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적립금 이전

(1)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나’ 항에서 규정한 펀드 중 3 개까지 선택(다만, ‘마. 평균분할투자에 관한 사항’ 에 따라 계약자가 평균분할투자를 선택한 경우 채권형 펀드를 제외하고 3 개까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펀드 각각에 대하여 5% 단위로 기본보험료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매년 12 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펀드 및 보험료 투입 비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을 따른다.

(3) 계약자는 매년 12 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펀드 적립금의 일부 및 전부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4) 회사는 (1)에 따른 펀드의 변경 및 (3)에 따른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약관 제 48 조 [특별계정의 폐지]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제 2 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5)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

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 2 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 (6) 회사는 (3)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자적립금의 0.1% 범위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4)의 현금이전시 공제(단, 연 4 회에 한하여 펀드변경수수료 면제)한다. 단, 수수료 중 5,000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변경전 펀드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 마. 평균분할투자

- (1) 계약자는 일시납 기본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평균분할투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모두 채권형 펀드로 투입된다.
- (2) (1)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계약자가 정한 평균분할투자기간(3, 6, 9, 12 개월 중 택 1)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제 42 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적립금 이전]에 따라 정한 펀드별 투입비율로 자동 투입됩니다. 또한 평균분할투자기간의 마지막 달에는 채권형 펀드에 남아있는 계약자적립금 잔액이 모두 투입된다. 다만, 평균분할투자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된다.
- (3) 계약자는 평균분할투자기간에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또는 펀드 적립금 이전이 불가하다.
- (4) 계약자는 평균분할투자기간 중에 평균분할투자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실행된 평균분할투자는 소급하여 취소할 수 없다.
- (5) (4)의 경우 계약자는 채권형 펀드에 남아있는 계약자적립금 잔액을 투입할 펀드의 유형과 투입비율을 지정할 수 있다. 단, 계약자가 펀드의 유형과 투입비율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2)에서 정한 펀드별 투입비율로 일시에 투입한다.

#### 바.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 (2) 시가법은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 (3)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사.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 원을 1 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 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 좌당 1,000 원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가격} \times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좌수}}$$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I 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아. 초기투자자금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2) (1)에서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 억원 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나) (1)의 규정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 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다) (1) 및 (2)의 규정에 따른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 자.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88 조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 265 조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차. 특별계정의 폐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가)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

- 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나)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다)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라) 가) 내지 다) 이외의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2) 회사는 (1)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단,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3) 회사는 (1) 및 (2)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20.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에 관한 사항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가)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단,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제 25 조 [기타] ‘가’ 항에 따라 이체한다)
- 나)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이 있는 경우
- 다)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가) 보험금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
- 나)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다) 제 23 조 [사망보험금의 연금선지급서비스에 관한 사항]에 따른 연금선지급금이 있는 경우
- 라)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및 리빙베네티인출이 있는 경우
- 마)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바) 계약자적립금에서 월공제액을 차감하는 경우
- 사)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 5 영업일 이내에 하며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로 한다.

- (2) ‘가’ 항의 규정에 따른 이체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 21. 보증준비금에 관한 사항

### 가. 최저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

- (1)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기본보험금”(소득보장형 계약의 은퇴나이 전 보험기간의 경우, 기본보험금과 월급여금의 일시지급금을 합산한 금액)과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말한다.
- (2)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이라 함은 월납의 경우 보험료 기본납입기간 2년(24개월)이후 일시납의 경우 계약일 이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정해지환급금” 이 “0” 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예정해지환급금” 이라 함은 예정적립금에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지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단, 일시납은 해지공제금액이 없음)을 말한다.

### 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에 관한 사항

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4 [보증준비금 산출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하여 적립한다.

## 22. 체증중지옵션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100 세체증형, 조기체증형 계약에서 기본보험금이 체증하기 시작한 후 체증중지옵션을 신청할 수 있다.
- 나. ‘가’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계약에 한하여 체증중지옵션을 신청할 수 있다.

## 23. 사망보험금의 연금선지급서비스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의 연금선지급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매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연금선지급금으로 하여 매년 연금선지급 해당일에 지급한다.

나.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유효한 계약(일시납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사망보험금의 연금선지급(이하 ‘연금선지급’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이후에 연금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연금선지급 방식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계약자는 연금선지급을 신청할 때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 연금선지급기간 선택형

계약자가 연금선지급 신청시점에 선택한 연금선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100세 중 1개를 선택) 동안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을 매년 일정한 금액(“연금선지급 신청시점의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90%” / “연금선지급기간”)으로 감액하여 감액된 비율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투자수익률에 따라 매년 수령하는 연금선지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

나) 연금선지급금 선택형

계약자가 연금선지급 신청시점에 선택한 연금선지급금(“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1~10%”에서 1% 단위로 선택)을 매년 지급하면서 연금선지급금 지급 직전 계약자적립금 대비 지급한 연금선지급금 비율 만큼 매년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이다. 투자수익률에 따라 연금선지급기간 및 매년 감액되는 보험가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연금선지급금 지급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5)에서 정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기준 미만이 될 경우 연금선지급이 종료된다.

(2) 연금선지급금은 신청일을 포함하여 연금선지급기간 동안 매년 연금선지급 신청 해당일에 지급한다. 단, 해당월에 연금선지급 신청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에 연금선지급금을 지급한다.

(3) 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연금선지급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에 지급된 연금선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에서 그 연금선지급금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4) 연금선지급 신청나이

55세~90세

(단, 소득보장형 계약의 경우 은퇴나이 후 보험기간에 신청 가능)

(5) 연금선지급금 지급 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은 가입 시점의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10%와 1,000 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라. 계약자는 연금선지급이 신청된 이후에 연금선지급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중지를 신청한 날 이후 연금선지급에 따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중단하고 연금선지급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마. 계약자는 연금선지급기간 중에는 연금선지급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외의 감액 및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바. 연금선지급에 따라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특약(특별조건부 특약 제외)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는다.

#### 24. 부가서비스(헬스케어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헬스케어서비스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고 서비스제공신청서(개인 [신용]정보 수집, 제공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한 피보험자에게 제공한다.

나. 헬스케어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사에 있다.

다. 헬스케어서비스는 대외환경 변화로 인하여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

#### 25. 기타

가. 이 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은 일반계정에서 운용한다.

나. 보험금액 등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체결 이후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 내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보험금액 변동에 관한 사항
- (2)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지시 해지환급금

다.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종목 및 일반사망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원하는 이름을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 등에 기재할 수 있다.

일반사망 보험가입금액(주)	평준형, 소득보장형	100세체증형, 조기체증형
3억원 미만	무배당 푸르덴셜 변액평 생보장보험	무배당 하이브리드 플러 스 변액평생보장보험
3억원 이상	무배당 WVIP 변액평생보장보험	

(주) 일반사망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및 주계약에 부가된 일반사망을 보장하는 선택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이어야 함

라. 보장승계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가 ‘다’ 항에 따라 ‘무배당 WVIP 변액평생보장보험’ 으로 가입한 경우 보장승계특약을 통해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승계 할 수 있다.
- (2) (1)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보장승계는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3) 보장승계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장승계특약 약관 규정을 따른다.

마. 관련 법규의 준용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 및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다.

바. 약관 제 24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2 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사. 회사는 보험료 산출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보험료 인하나 보험금 증액 등을 할 수 있다.

아.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자. 회사는 “무배당 WVIP 변액평생보장보험” 계약에 대해 상품명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상품명 앞에 “경영인” 또는 “Doctor” 를 기재할 수 있다.